

미술품 관련 돈세탁에 대한 법률적인 접근*

Legal Approach on Art-related Money Laundering

이 재 정**

Lee, Jae-Kyoung

목 차

- | | |
|----------------------|-------------------------|
| I. 서론 | IV. 미술품 관련 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
| II. 미술품을 이용한 기업의 돈세탁 | 국내적, 국제적 규제 |
| III. 기업-갤러리 관련 국내 사례 | V. 결론 - 미술시장 발전과의 조화 |

최근 몇 년간 대기업들이 미술품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면서 미술품을 이용한 범죄, 그리고 그에 따른 돈세탁 등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미술품이 기업 비자금 조성 수단 혹은 세금탈루의 수단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된다면, 사회 전체가 미술품 거래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건전한 미술시장 형성 및 발전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미술품을 이용한 기업의 돈세탁이 시도되는 이유 및 범죄의 상하부적인 구조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갤러리가 기업의 비자금 조성 창구로 이용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던 굵직한 사건들을 검토함으로써 그 원인과 대책을 살펴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미술품을 이용한 비자금 조성 및 탈세 등 돈세탁이 시의적절한 입법의 공백 및 사법당국의 판단 능력 부재로 인해 적절히 규제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함과 동시에 미술 선진국의 대응방안들을 비교법적으로 살펴보면, 미술품 범죄에 대한 독자적인 규제 필요성 및 관련 대안들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특정금융거래보고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은행은 5,00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 및 의심나는 거래를 발견하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금융기관 종사자, 즉 은행창구 직원이 의심나는 현금 입출금을 보고도 보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미술품 범죄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 법령은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법령만으로는 미술품 범죄 및 돈세탁에 대한 구체적이면서 효율적인 규제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투고일 : 2015. 4. 29. / 심사외의일 : 2015. 5. 28. / 게재확정일 : 2015. 6. 11.

* 이 논문은 2012년도 건국대학교 학술진흥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변호사

Assistant Professor, Law School of Konkuk University.

최근 국내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미술품 관련 범죄 및 그와 연루된 돈세탁,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제적으로 연결된 조직범죄에 미술품이 악용되는 세계적인 추세를 고려해 본다면, 이는 단순히 자치적인 차원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이면서도 효율적인 국내 입법 및 철저한 집행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야 하며, 더 나아가 사법당국과 미술계 사이의 긴밀한 협력관계 및 각국의 담당기관들 사이의 국제적인 공조를 통하여 미술품 범죄의 조직화 및 국제화를 방지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국외 입법 및 분쟁 해결 사례 등을 통하여 더 체계적, 전문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추후 더 교묘해지고 지능화, 대규모화되는 미술품 범죄 및 그에 따른 돈세탁의 뿌리를 뽑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미술품 범죄, 돈세탁, 비자금, 미술품 도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970년 UNESCO 협약, 1995년 UNIDROIT협약

I. 서 론

글로벌 금융위기 예측으로 유명한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2015년 초 경제전망에 관련된 대답에서 미술품 시장이 돈세탁, 조세회피, 내부정보거래, 가격조작 등 여러 범죄¹⁾에 취약하기 때문에 정부 시장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점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미술계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이 다시 재조명받고 있다. 이에 덧붙여, 마틴 로스 런던 빅토리아앤드앨버트 박물관 관장은 “예술이란 이름으로 위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돈세탁”이라며 “결국 기업과 글로벌 통화에만 연관이 있을 뿐, 실제 예술품과는 연관이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루비니 교수와 함께 로스 관장은 지하시장과 재정적으로 비교할 때, 양성화된 시장의 미술품이 얼마나 쉽게 국내 뿐 아니라, 국제적인 조직과 결탁된 범죄에 노출되고 있는지 역설하고 있다.²⁾

하지만, 미술시장의 태생적인 투기적인 성격과 미술품 가격 산정에 대한 극도의 주관성을 감안하더라도, 오늘날 미술 시장이 기업, 기관 등과 결탁하여 비자금 조성 및 세금

1) 조선일보, “미술품 경매와 돈세탁”, 2015. 5. 14. 루비니 교수는 고가 미술품이 제네바의 무관세 거래소 ‘프리포트’로 흘러든다고도 했다. 프리포트는 세계 다섯 곳에 생겼고, 수십 번 거래돼도 세금을 안 낸다는 점을 강조한 그는 “프리포트가 안전 금고 역할을 하고 있다. 프리포트에 뭐가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다.

2) 헤럴드경제, “‘닥터 둠’ 루비니 교수, “미술품 시장 범죄에 취약하다””, 2015. 1. 23. 루비니 교수는 “좋은 나쁜 미술품은 조세회피에 사용되고 있다”며 “이는 돈세탁에 쓰일 수 있고, 여권을 보여주지 않고 50만 달러에 물건을 사서 보낼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를 돈세탁에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탈세의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현실은 이에 대한 사법당국의 적절한 규제가 필요함을 대변해 주고 있다. 오늘날 기업이나 재벌 개인이 갤러리를 운영하는 경우³⁾는 흔하며, 불과 몇 해 전의 오리온그룹의 비자금 조성, 서미갤러리 사건을 포함하여 삼성그룹과 국제갤러리 사건 등 굵직굵직한 사건들은 우리나라 미술계를 부끄럽게 만들었던 사건들이었다.

대기업과 미술계의 결탁과 관련해 자주 제기되는 의혹은 우선 i) ‘비자금 세탁’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즉, 불법적인 방법으로 마련한 비자금을 안전하고 표면적으로 예술애호라는 허울로 치장하여 묻어두기에는 미술품이 적절한 도구가 된다. 특히, 기업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미술관의 경우, 작품 구입비를 부풀려 차액을 비자금으로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부정적인 시각부터 앞서는 것이 안타까운 현재 상황이다. 미술품과 관련된 기업의 비리로서 다음으로 꼽을 수 있는 사항은 ii) ‘투기 의혹’이다. 즉, 부동산 중개소에서 손님에게 투자용 부동산 매입을 권유해 나중에 비싼 가격에 되팔아주면서 거액의 수수료를 챙기는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된다. 기업 등이 미술품을 이용하여 저지를 수 있는 셋째의 범죄 유형으로는 iii) ‘상속 의혹’, 즉 거액의 재산을 미술품으로 바꿔 세금 없이 기업 대주주의 상속인들에게 상속하려는 행태를 들 수 있다. 불과 2013년 전까지만 해도 미술품에는 관세는 물론 양도소득세도 붙지 않았으며, 양도소득세가 시행된 2013년 이후에도 부동산등기부처럼 미술품의 권리관계를 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장부가 마련되지 아니하는 이상, 미술품의 양도소득세의 부과는 사실상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미술품의 상속, 증여는 과세대상이지만 등기, 등록의 필요가 없어서 아직 세금을 회피할 여지가 많다. 또한, 통관기록에 남는 해외 작품과 달리 국내 작품의 경우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술품의 현재 소유자를 확인하기 어렵다.⁴⁾

미술품이 기업 비자금 조성 수단 혹은 세금탈루의 수단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된다면, 사회 전체가 미술품 거래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건전한 미술시장 형성 및 경제질서 확립을 저해하고 정상거래를 오염할 우려가 있다.⁵⁾ 따라서 아래에서는

3) 전국 80여개의 사립미술관 가운데 제대로 운영되는 곳은 재벌 미술관들로 대부분 재벌가 여성들이 관장직을 맡고 있다. 박문순 성곡미술관장은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의 부인, 박강자 금호미술관장은 고(故) 박성용 금호그룹 명예회장의 여동생, 정희자 아트선재센터 관장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은 SK 최태원 회장의 부인이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이다. 갤러리 대표들은 이들 재벌 미술관장과 손을 잡기 위해 혈안이다. 관계가 맺어지면 화랑 매출은 물론이고 이미지도 수직 상승하기 때문이다.

4) 조성식, “삼성 비자금-국제 갤러리, ‘수상한 거래’ 내막 : 삼성 차명계좌서 거액 유입 후 미술품 수입액 급증”, 신동아, 2008.

미술품을 이용한 기업의 돈세탁이 시도되는 배경 및 그 구조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에서 최근 갤러리가 기업의 비자금 조성 창구로 이용되었다는 의혹을 받았던 사건들을 검토한다. 다음으로 미술품을 이용한 비자금 조성 및 탈세 등 돈세탁이 법규의 공백 및 사정당국의 능력 부재로 인하여 적절히 규제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독자적인 규제 필요성 및 기타 대안들을 논의한다.

II. 미술품을 이용한 기업의 돈세탁

1. 돈세탁(money laundering)의 의미, 구조 및 규제

‘돈세탁’이란 일반적으로 마약, 테러를 비롯하여 기업의 비자금이나 탈세 등 각종 범죄행위를 통해 얻은 수입을 불법적으로 조작하여 그 자금출처를 은폐함으로써 추적을 어렵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⁶⁾ 우리나라의 실정법에서는 ‘돈세탁’을 ‘불법재산의 취득·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및 외국환거래 등을 이용한 탈세목적으로 재산의 취득·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이하 “특정금융거래보고법”)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된 개념으로서 ‘범죄수익’을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報酬)로 얻은 재산’(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이하 “범죄수익규제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 이민관세국(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은 돈세탁을 “일체의 불법행위로 인한 수익의 합법화(legitimization of proceeds from any illegal activity)”라고 정의하기도 한다.⁷⁾ 돈세탁이 나날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중국에서는 불법자금의 합법화와 관련하여 “상위범죄”-“하위범죄”의 개념으로 돈세탁 방지를 위하여 입법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⁸⁾

5) 이보영, “자금세탁방지법제에 대한 형법적 검토”, 형사법연구 21권 1호, 한국형사법학회, 2009, 442쪽.

6) 네이버 백과사전 - 돈세탁.

7) <<http://www.ice.gov/pi/financial/moneylaundering.htm>>

8) 중국법상 “상위범죄”란 불법재산을 형성하는 각종 범죄의 총칭으로써 원생죄(原生罪)·전치범죄(前置犯罪) 또는 선행범죄(先行犯罪)라고도 한다. 돈세탁죄는 “상위범죄”에 종속되는 “하류(下游)범죄”로써 “원생범죄”에 종속되는 “파생범죄(派生犯罪)”이라고도 인찌엔펑(Jian Feng Yin), 중국 돈세탁죄 상위범죄의 입법정의 및 개선, 비교형사법연구 12권2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0, 614쪽; 장웬황, 한상돈(역), “중국 돈세탁범죄의 현황 및 반돈세탁죄 입법 분석”, 비교형사법연구 8권2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6.

국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1999년 유엔마약 및 범죄사무소(United Nations Office for Drugs and Crimes, UNODC) 및 돈세탁방지국제금융대책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의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면,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산의 진실한 성격, 출처 장소 흐름 및 이전을 은닉, 위장하거나 불법활동 관련자를 도와 법률책임을 회피하도록 하는 행위를 정의할 수 있다.⁹⁾

돈세탁은 가명 입금, 자금의 국외운반, 유령회사 이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 일반적으로 i) 배치단계(placement), ii) 반복단계(layering), iii) 통합단계(integration)의 3단계 과정으로 분석할 수 있다.¹⁰⁾ 즉, 범죄 수익을 수사기관 등에 적발되지 않도록 가명계좌를 통해 여러 지역의 여러 개의 은행 등 금융기관들에 배분하여 입금시키고(배치단계), 반복적인 전신 송금을 통하여 해당 자금의 입출금 고리를 숨기고(반복단계), 최종적으로 해외 대출자금인 것처럼 가장하여 들여와 새로운 범죄자금에 사용하거나 합법적 경제활동에 침투시키는 단계(통합단계)를 거치게 된다.¹¹⁾ 최근에는 사정당국의 규율 및 관리대상인 금융기관보다는 상대적으로 규율의 강도가 낮은 비금융기관을 이용한 돈세탁이 자주 이용되는바, 부동산거래가 자주 이용된다.¹²⁾ 부동산거래를 이용하여 돈세탁은 극도로 저평가된 부동산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이용되는바, 돈세탁자가 부동산의 매도인에게 실제로 현금으로 지급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서에 기재하고 장기간이 지난 후 해당 부동산의 시장가격이 정상적으로 평가될 때를 기다리면, 그 시기에 정상 가격만큼 돈세탁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극도로 저평가 거래가액에 대하여는 사정당국이 자금출처를 조사하는 경우가 드물거나, 조사하더라도 출처를 쉽게 입증할 수 있다는 맹점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과대평가된 부동산을 구입함에 있어 일단 최대한 많은 금액의 대출을 받아서 최소한의 금액에 구입하여 추후 장기간에 걸쳐 대출금액을 변제해가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¹³⁾ 그런데, 부동산 분야에 대해서도

796-798쪽.

- 9) 김철, “중국 돈세탁방지법의 제정과 시사점”, 중국법연구 8집, 한중법학회, 2007. 2-4쪽; 정완, “일본의 돈세탁 규제 동향”, 형사정책연구소식 63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35-36쪽.
- 10) Baldwin, F.N., Art Theft: Perfecting the Art of Money Laundering, Jan, 2009 for the 7th Annual Hawaii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rts & Humanities, at PP. 9-11
- 11) Syed Waqar Hasib, Why the Global Anti-Money Laundering Regime is Ill-Equipped to Fight the War on Terrorism, and What to do about It, May 2004, at 9,10.
- 12) Financial Action Task Force-Groupe d'action financiere(“FATF”), Report Highlights Money Laundering Trends, Feb. 6, 1997, <http://www.fincen.gov/news_room/nr/html/19970206.html>.
- 13) FATF, Money Laundering and Terrorist Financing Through the Real Estate Sector, 21-24, June 29, 2007.

돈세탁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의 규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돈세탁 범죄자들은 규율이 더 약하거나 사실상 규율하기 힘든 미술 산업까지 돈세탁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 범죄조직 등 돈세탁 수요자들은 미술품 가격이 대부분 추정적(speculative)이며, 사정당국이 정상적인 미술품가격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어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미술품 거래에 있어 미술품 가격을 높이거나 낮추어 송장(invoice 청구서)을 작성하는 방법(over and under invoicing)을 통하여 불법자금의 원천을 마치 합법적인 것으로 둔갑시키는 것이다. 동일한 미술품에 복수의 송장(multiple invoicing)을 작성하는 방법도 추후 사정당국으로 자금세탁으로 의심받는 경우에 착오 등 다른 핑계를 대면서 혐의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수법에 해당한다. 심지어, 미술품의 과소 또는 과도 선적(over and under shipment) 또는 미술품에 대한 허위 묘사(false description)를 통하여 진정한 미술품 숫자 또는 가격이 아닌 허위의 미술품 거래에 대한 자금 지급에 불법자금을 이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해당 자금원천을 부당하게 은닉하는 것이다.¹⁴⁾

역사적으로 외국의 경우, 돈세탁자들은 대량의 현금을 별다른 의심을 끌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이상적 시장인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돈세탁을 해왔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1970년의 은행비밀법(Bank Secrecy Act)의 제정으로 인해 금융기관은 1만 달러가 넘는 예금, 인출, 환전, 송금 등에 대해서는 거래거래보고서(Currency Transaction Report, CTR)¹⁵⁾를, 법이나 규제 위반의 가능성이 있거나 그렇다고 믿어지는 의심스러운 거래의 경우 의심행위보고서(Suspicious Activity Reports, SARs)¹⁶⁾를 미국 재무부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FinCEN)에 제출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이러한 돈거래가 어려워졌다.

우리나라도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따라 은행은 5,00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 및 의심나는 거래를 발견하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금융기관 종사자, 즉 은행창구 직원이 의심나는 현금 입출금을 보고도 보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돼 있다.¹⁷⁾ 금융정보분석원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분석을 벌인 뒤

14) FATF, Trade Based Money Laundering at 5-6, 18-19.

〈<http://www.fatf-gafi.org/dataoecd/60/25/37038272.pdf>〉

15) 31 C.F.R. 103.22(b).

16) 31 C.F.R. 103.18.

17) 제4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①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授受)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로서

돈 세탁 행위와 관련된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검찰·국세청·금감위·중앙선관위 등)에 자료를 제공한다. 범죄수익규제법은 조직범죄, 거액 경제범죄, 부패범죄 등 109개의 범죄를 돈 세탁의 대상 범죄로 규정해 여기에서 얻은 범죄수익의 은닉·가장 행위(돈 세탁 행위)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 범죄수익 또는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등은 몰수·추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돈세탁에 미술품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술품 관련 수익이 간접 수익에 해당하는 경우, 독일형법상의 돈세탁죄나 우리법제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범죄수익은닉·가장죄로서 규율하기 곤란하므로 권리행사죄¹⁸⁾를 추가해야 한다거나, 돈세탁죄를 불법수익의 은닉·가장죄와 불법수익의 취득·소지·사용죄로 구별되므로 불법수익사용죄¹⁹⁾로 규율해야 한다는 견해는 미술품에 대한 입법에 소극적인 우리나라에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편, 부동산거래를 이용한 돈세탁에 있어, 미국은 2001년 9월 이후 애국자법(U.S.A. Patriot Act)의 통과로 인하여 부동산 대리인들은 1만 달러가 넘는 부동산 거래의 경우 보고 의무를 부담한다.²⁰⁾ 마약 불법거래상이나 무기상인 등과 같은 조직범죄집단에게

그 금융거래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2.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제1호를 회피할 목적으로 금액을 분할하여 금융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로서 분할 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종사자가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②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합계액을 말한다) 미만인 경우라도 그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생략)

제4조의2(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 ① 금융회사등은 5천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현금(외국통화는 제외한다)이나 현금과 비슷한 기능의 지급수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현금등”이라 한다)을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영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금융회사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과의 현금등의 지급 또는 영수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와의 현금등의 지급 또는 영수

3.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없는 일상적인 현금등의 지급 또는 영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제1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금액을 분할하여 금융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생략)

18) 최관식, “기업을 이용한 돈세탁에 대한 규제”, 법학논총 21집,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280쪽.

19) 이병기, “이경제, 돈세탁행위의 범죄화에 관한 연구”, 연구총서 93-2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136쪽.

전통적인 자금세탁 방법이 더 이상 효과를 거둘 수 없게 되면서, 불법행위로부터 얻은 자금을 세탁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으로 미술품을 통한 자금세탁을 모색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거래를 이용한 돈세탁을 규제하는 특별한 입법은 없으나,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시제도(등기부) 및 공시지가제도가 운영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미술품을 이용한 돈세탁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그 규율이 용이하며, 형법이나 범죄수익규제법 등의 관련 규정을 통하여 규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미술품이 돈세탁에 이용되는 이유

미술품은 다른 일반적인 소비재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고가이며, 고정된 가격이 없이 작품 가격이 쉽게 변동한다. 몇 년 전, 그림 로비에 연루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서미갤러리는 1990년대 중반 S그룹에 루이즈 부르주아의 조각품 ‘스파이더(Spider)’를 당시 가격으로 24만 달러에(2억 원 정도)에 판매하였고, 2010년대의 이 작품의 국제적 경매 가격은 약 100억 원대에 육박하는데, 서미 갤러리 측은 재벌의 취향과 안목에 따라 그림을 샀으며 투기 목적으로 구입한 게 아니라고 변명했다.²¹⁾ 이처럼 보통 미술품은 부동산과는 달리 현금화가 쉽고 보유 기간에 따라 가격이 오를 가능성도 있어 훌륭한 재테크 수단일 수 있는 한편, 미술품이 비자금 조성 등 돈세탁에 이용되는 경우 그것을 밝혀내는 것도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더 나아가 작품 가격 감정의 복잡성과 어려움은 미술품이 돈세탁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는지를 판단하는 사정당국의 능력에 커다란 장애로 작용한다.²²⁾

서미 갤러리의 경우, 돈세탁을 위하여 미술품을 구매하는 경우를 가정하였지만, 빈번하게 돈세탁을 하는 조직범죄자들도 도난 예술품을 이용한다. 이러한 경우 조직범죄자들은 예술작품을 절취하여 다른 중개매매상이나 경매회사에 판매한 후 이전에 절취한 작품으로부터 취득한 불법이득을 숨기기 위하여 다른 작품을 구매하고 되팔음으로써 깨끗한 돈을 얻게 되는 것이다.²³⁾ 미술품 도난은 마약범죄상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이윤을

20) Uniting and Strengthening America by Providing Appropriate Tools Required to Intercept and Obstruct Terrorism Act of 2001, s 365.

21) 조선일보, “재벌가에 2억에 판 작품이 지금 100억대… 투기는 아니다”, 2011. 3. 25.

22) Megan K. Masher & Jon Michael Thompson, Intellectual Property Crimes, 39 Am. Crim. L. Rev. 763, 804, 2002.

23) Hannah Purkey, The Art of Money Laundering, Florida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2010,

남기는 불법거래로 추정되고 있고 그 직접적 결과로 미술품 도난도 그 규모가 1년에 20억~60억에 달하는 호황 산업이 되고 있다. 미술품은 손에 넣기 쉽고 이동성이 있으며, 보관하기 쉽기 때문에 조직범죄자들에게 매력적인 범죄수단인 것이다.²⁴⁾

미술품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로 우리나라 미술품 거래자는 작품의 가격과 상관없이 취득·등록세 등 다른 유형자산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 및 관세를 면제 받는다는 점을 눈여겨 보아야 한다. 비록 2014년부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지만, 양도소득세 외에 미술품 거래와 관련된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미술품이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팔렸는지 과세관청 등 사법당국에 잘 드러나지 않고 수사기관의 추적도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자금 세탁이나 탈세, 뇌물의 수단이 되는 것이다.²⁵⁾

특히 거래 고객과 거래를 대행하는 갤러리 사이에 상속·증여 등 재산이동과 증식이 가능하다. 객관적인 가격이 정해지지 않는 미술품은 수십억 원에 은밀히 거래될 가능성도 높다. 자녀에게 돈을 주거나 부동산을 물려주면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지만 미술품은 상속이나 증여 사실이 잘 포착되지 않는다. 또한, 미술시장의 관행상 미술품 거래 고객에 대한 비밀 유지가 철저하게 보장되기 때문에 비자금 조성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만약, 미술품을 거래함에 있어 현금으로 거래를 하고 회계장부는 만들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이른바 ‘검은 돈’이 흘러들어온다 가정하여도 비밀유지가 될 수 있다. 화랑을 포함한 미술품중개상들은 거래 당사자들을 밝힐 어떤 유인이나 의무도 없기 때문에 이러한 거래는 현금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기업들이 돈세탁을 하는 것을 부수적으로 돕게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술품중개상에게 미술품 매매에 대한 보고의무를 부과하자는 논의 및 움직임이 있으나, 미술품 유통질서가 선진화되어있는 프랑스 등의 경우²⁶⁾와는 달리, 유통체계가 제대로 잡혀있지 아니한 우리나라 미술시장의 상황²⁷⁾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의무의 적절한 도입은 당장 어려운 실정이다.²⁸⁾

at 118.

24) Marianne James, Art Crime, Australian Institute of Criminology, Trends and Issues in Crime and Criminal Justice, 2000, p23.

25) 누리창 갤러리가 재벌 비자금 조성 창구?, 2011.3.25.

26) 김민아, “미술품 시장 및 거래에 관한 법적 고찰”, 한국외국어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51-52쪽. 프랑스의 경우, 관할 경찰서의 거래대장에 거래내용을 보고할 의무를 부담한다.

27) 이재경, “미술품 유통에 대한 행정적 규제”, 행정법연구 37권,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3, 90쪽 이하 외국 사례 참조.

28) 보고 및 공개의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Julia A. McCord, The Strategic Tageting of Diligence: A New Perspective on Stemming the Illicit Trade in Art, Indiana L.J, 1994, p997-p1007.

한편, 2000년대 이후 세계 미술시장의 큰 손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 부자들도 미술품을 통한 돈세탁에 적극 나서고 있는바, 중국 부자들이 미술품을 통하여 자신의 자산을 돈세탁하여 조세피난처로 송금하는 이유 중에는 위에서 열거한 이유들 외에 진짜와 위조품을 쉽게 구별하기 힘든 데다 대부분 거래할 때 현금을 이용해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도 추가된다. 그들이 미술작품으로 돈세탁을 하는 방법으로는 우선, 중국 본토에서 자국 서예 작품이나 도자기 등 작품을 구입한 후 해외에서 비싸게 다시 파는 방법을 들 수 있는바, 이 경우 차액은 달러를 현금으로 받기 때문에 기록이 남지 않는다. 또 다른 방법은 해외에서 차명 계좌를 이용해 미술품을 일부러 부풀린 가격에 사는 방법이 꼽히고 있다. 이러한 경우, 중국 부자가 작품을 파는 사람과 사전에 말을 맞춘 후 비싼 가격에 사면 판매자는 부풀린 남은 가격을 중국인의 역외 계좌에 입금하게 되며, 금융당국에게 적발된다면 영수증을 쉽게 위조하여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다.²⁹⁾

이처럼 미술 시장은 전통적인 돈세탁 루트였던 금융기관이나 부동산 부문과는 달리 규제가 없거나 크게 완화되어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갤러리나 경매회사와 같은 미술품 거래자들은 특정한 면허나 자격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특별한 의무가 부과되지도 않은 채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원하는 기간만큼 미술 갤러리 등을 설립,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예술 작품이 돈세탁 등의 불법 행위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감시, 규제해야 하는 세관청 등의 정부기관들은 미술의 가치 평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미술품의 감정 자체가 주관적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법행위를 사전에 감지하기가 어려울 뿐더러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사후적으로 추적하여 손해배상 등 적절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도 기대하기 어렵다.

Ⅲ. 기업-갤러리 관련 국내 사례

우리나라에서 역대 그림 로비 및 비자금 의혹 사건으로는 우선 1999년 신동아그룹 회장 부인 이형자씨가 김기창 화백의 동양화 203점 등 72억 원어치 그림을 로비에 썼다는 의혹을 받았던 옷로비 사건이 있었으며, 당시 검찰 수사를 통하여 실체 없는 해프닝으로 결론이 났다. 2007년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이던 변양균씨가 정부예산으로 사진작품과 회화 등 2점을 2000만원에 구입해 장관실과 회의실에 설치했던 신정아-변양균 스캔들이

29) 이데일리, “中 부자, 돈세탁에 ‘미술품’ 선호”, 2014.2.24.

있었고, 같은 해 당시 전군표 국세청장에게 인사청탁을 하며 최옥경 화백의 그림 ‘학동마을’을 상납했다는 의혹을 받은 한상률 로비 의혹 사건 등이 있었다. 심지어 2013년 전두환 전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관련 압수 과정에서 대규모의 미술품 컬렉션이 등장하자 돈세탁의 의혹이 일기도 했었다.³⁰⁾ 이하, 기업의 비자금 조성 의혹 및 세금 탈루와 관련하여 대표적으로 삼성그룹 사건과 비교적 최근에 발생한 오리온그룹 비자금 사건을 검토한다.

1. 삼성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³¹⁾

2007년 10월 당시 김용철 변호사(전 삼성그룹 법무팀장)는 “나도 모르던 내 이름의 도명계좌에 수십억 원의 삼성 비자금이 들어 있다”고 폭로하면서 “삼성 측이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등 분식회계를 통해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고, 이를 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에 넣어 관리하면서 이진희 회장의 개인자금처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2년~2003년 삼성그룹의 비자금을 이용해 이진희 회장의 부인 홍라희 여사 등이 600억 원대의 미술품을 구입했다고 주장하면서 ‘베를레헴 병원’(프랭크 스텔라), ‘행복한 눈물’(리히텐슈타인) 등의 그림이 포함된 구입 미술품의 리스트를 공개했다.

특검팀은 김 변호사의 폭로와 삼성증권 전직 직원의 협박 메일 등을 단서로 삼성그룹이 4조5000억 원대의 주식과 현금이 들어있는 1199개의 차명계좌를 운용한 사실을 밝혀냈고, 개인주주 명의의 삼성생명 지분 16%의 원래 주인이 이 회장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삼성 측이 이 돈으로 국제갤러리와 서미갤러리 등을 통해 고가의 해외 미술품을 사들인 사실도 확인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자금의 출처를 밝히는 데는 끝내 실패했다. 특히 삼성전자에서 130억 원이 흘러들어간 ‘차명 의심 계좌’의 경우, 삼성전자 주식을 매입해 장기 보관하면서 배당금이 들어올 때마다 1원 단위까지 현금으로 인출되고, 일부는 서미갤러리로 유입되는 등 ‘수상한 단서’가 포착됐지만, 결국 삼성전자 임원들의 ‘성과급 계좌’로 결론 내렸다. 결국 특검팀은 삼성 측에 대해 횡령 혐의 적용을 포기하고 차명계좌임을 인정하고, “주식의 차명 분산 소유를 통해 세금을 피한 것은 ‘사기 등을

30) JTBC, “전두환 일가, 1997년 특별사면 후 돈세탁 시작했을 것”, 2013.8.16.

31) 이하의 사실관계는 관련 신문기사들을 요약하였음. 국민일보, “재벌가 수상한 그림 사랑… 갤러리-재벌, 그림 거래 어떻게”, 2011.6.16; 연합뉴스, “삼성 비자금 600억 고가미술품 구입”, 2007.11.26.; 조선일보, “‘비자금 조성’ 의혹 못 밝힌 채 ‘탈세’로 방향 틀어”, 2008.4.18.

통한조세포탈”이라고 판단, 이 회장 등 임원직 4명을 기소하고 차명이 확인된 만큼 이 회장이 5000억 원 정도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점을 국세청에 통보키로 했다.

이로부터 3년 4개월여의 세월이 흐른 2011년 6월 7일 홍 대표가 오리온 비자금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되면서 홍 관장을 상대로 “2009년 8월부터 2010년 2월 사이 홍 관장에게 판매한 14점의 그림 값 781억8000만원 중 531억8000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잔금 가운데 50억 원을 우선 변제하라는 소송을 내기도 했다. 홍 대표가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14점의 그림목록 중 대표작은 미국 작가 빌럼 데 쿠닝의 ‘무제 VI’(1975년 작·313억 원), 영국 작가 프랜시스 베이컨의 ‘아이를 데리고 가는 남자’(1956년 작·216억 원), 역시 영국 작가 데미안 허스트의 ‘황소의 머리’(2009년 작·64억5000만원) 등이다. 홍 대표가 홍 관장에게 판매했다고 주장하는 이들 작품의 가격은 실제보다 수십 배 부풀려졌다는 게 미술계 시각이다. 한 미술품 경매회사 관계자는 “쿠닝의 ‘무제 VI’ 같은 경우 2000년 경매 낙찰가에 비해 23배 높은 가격이고 다른 작품들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검찰 주변과 미술계에서는 홍 대표와 홍 관장이 미술품 가격을 부풀려 거래한 이유에 대하여 미술품 판매 가격을 부풀려 적은 뒤 차액을 돌려주는 수법으로 삼성가의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없지 않았다.

2. 오리온그룹 - 서미갤러리³²⁾

검찰은 오리온 그룹이 부동산 개발 사업 과정에서 미술품 거래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관련 업체와 갤러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오리온그룹이 지난 2006년 7월 서울 청담동의 물류창고 부지를 부동산 시행업체인 E사에 매각하면서 땅값을 시세보다 낮게 책정한 계약서를 써주는 대가로 고가의 미술품을 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시행사인 E사는 시공을 오리온그룹 계열사인 메가마크에 맡겼으며, 부동산 개발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뒤 서미갤러리에 40억여 원을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는 오리온그룹의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홍 대표는 오리온그룹이 조성한 비자금 40억 6천만 원을 입금 받아 미술품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32) 이하의 사실관계는 관련 신문기사들의 요약하였음. 연합뉴스, “‘오리온 비자금’ 서미갤러리 대표 영장”, 2011.5.4.; 한국경제, “서미갤러리 대표 ‘오리온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 2011.6.13.

‘돈세탁’을 해 범죄수익을 은닉해준 혐의와 미술품을 불법 거래하고 그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되었다. 재판과정에서 홍 대표의 변호인은 “논란이 되고 있는 40억여 원은 조정민 오리온 그룹 사장이 횡령한 돈이 아닐 뿐더러 설사 횡령한 돈이라 하더라도 홍 대표는 이 돈을 마크힐스 시행사 대표 박 모씨와 미술품 거래를 한 뒤 정당하게 받았으므로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또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작품 ‘스틸라이프(Still Life, 시가 90억 원 상당)’를 담보로 대출받은 180억 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횡령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루돌프 스팅겔의 그림 ‘언타이틀드(Untitled, 8억1000만원 상당)’는 홍 대표 소유의 그림이기 때문에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서미갤러리에서 개인적으로 5억5000만원을 횡령한 공소사실은 인정했고, 회사가 입은 피해를 모두 복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오리온 그룹 전 사장이 횡령을 그림 거래로 위장하려 한 ‘비자금 세탁’에 관여하고 그림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180억 원을 대출받아 횡령한 홍 대표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다.

최근에도 홍 대표는 미술품의 불법거래에 관여했는데, 2013년부터 동양그룹의 사기성 기업어음 발행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2013년 6월 현재현 회장의 부인 이해경 부회장 소유의 미술품 보관창고와 서울 청담동의 서미 갤러리를 압수수색한 결과 이 부회장이 홍씨를 통해 빼돌린 미술품에는 백남준의 설치미술 작품 1점, 미국의 팝아티스트인 클라에스 올덴버그의 작품 등 점당 수 억 원을 호가하는 미술품들이 포함돼 있음을 확인하고, 법원이 동양그룹에 대한 가압류에 들어가기 직전 이 부회장이 고가의 미술품을 빼돌려 팔아치운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홍 대표가 구속되어 재판을 진행하는 중이다. 홍 대표는 2013년 12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이 부회장이 빼돌린 330여 점의 그림 중 10여 점을 넘겨받아 매매를 주선하고 그 중 미술품 2점을 판 금액 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³³⁾

33) 경향신문, ‘재벌가 미술상’ 홍송원 서미 갤러리 대표 구속, 2014.9.16. 뿐만 아니라,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의 증여세 탈루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홍 대표가 앤디 워홀의 작품 ‘재키’를 25억 원에 구매해 준 사실이 드러났다. 홍 대표는 지난해 검찰이 CJ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혐의를 수사할 때도 수사 대상에 올랐으며, CJ그룹이 미술품 거래로 비자금을 세탁하는 과정에서 1000억 원이 넘는 해외 미술품 구매를 대행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홍 대표는 이 과정에서 법인세 30억 원을 탈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3. 일련의 사례들에 대한 비판적 고찰

기업들이 미술작품 구입에 힘을 쏟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반사이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미술품 가격이 치솟기 전에 잠재적인 수익성을 보고 미리 구매한 후 10~20년이 지나면 엄청난 수익이 보장되는 게 미술품 컬렉션의 매력이다. 유명한 국내 외 거장의 작품의 경우는 이미 매우 높은 가격이지만, 그 역시 수년 뒤 몇 배의 가격으로 뛰게 되고 아직 유명해지지 않은 작가의 작품이더라도 유명 기업이나 컬렉터의 소장물 거치고 나면 말 그대로 스타가 되어 가격이 엄청 오른다. 표면적으로는 기업주의 예술 애호라는 고상한 취미로 비춰질 것이며, 기업 전체적인 차원에서 문화사업의 일환으로 기업의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되므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미술품 구입을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국내 재벌들에게 미술품 관련 탈세·탈루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는 이들이 무슨 그림을 어떠한 거래선을 통하여 어떤 가격에 구입하는지 전혀 알 수 없고 거래와 관련된 세금도 거의 없기 때문이다. 2013년부터 시행되는 양도소득세도 그 영향력이 미미하다 보니, 미술품을 바라보는 기업의 시각을 그리 바뀔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미술품이 ‘기업의 탈세·로비 수단’이라는 인식과 함께 화랑이 ‘비자금 세탁처’라는 오명은 그대로 남아 있다. 문화재단을 만들어 미술관을 설립하면 세금면제, 로또문화기금 수혜 등을 받으면서 공적인 요소가 커지지만 많은 미술관이 여전히 기업의 지배주주들이 언제 어디서 악용할지 모르는 사적인 공간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명백한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것을 수면 위로 올리고, 불필요한 오명을 씻어내어 더욱 건전한 미술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내외 차원의 규제 노력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다.

IV. 미술품 관련 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국내적, 국제적 규제

1. 화랑 및 경매회사의 의무

화랑 및 경매회사는 고도의 선의로 고객 혹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대리인 의무를 지닌다. 즉 대리인으로써의 경매인 또는 중개상은 위임된 사무와 관련된 정보를 본인에게 제공하는데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과 불가능한 것을 시도하지 않을 것이

요구된다. 경매회사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소송 원인이 계약상이건 부주의건 본인에게 야기된 손해에 책임이 있다.³⁴⁾ 경매사의 의무는 국가마다 다양한데 뉴욕의 경우 경매인은 면허를 필요로 하고 경매를 통한 물건을 적절하게 관리할 전반적인 책임이 있다.³⁵⁾ 네덜란드는 경매인과 판매자, 일반인 간의 중개인 유형을 제시함으로써 미국보다 엄격한 경매인 관행을 부여한다. 자금세탁자들은 네덜란드 같은 유형보다는 미국의 소더비나 크리스티와 같이 국가에 의해 운영되지 않아 국가의 엄격한 규제를 받지 않는 국제적으로 기반을 둔 대형 경매회사를 통해 돈세탁을 꾀한다.³⁶⁾

미국에서 화랑이나 경매회사 자체는 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UCC)에 의해 규제되지만, 미술품 거래대금으로 현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명백한 제한이 없다. 경매대금의 지급 방법은 경매회사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며 소더비나 크리스티와 같은 대형 경매회사는 현금지급을 적절한 형식으로 인정한다. 대형 경매회사에게 대리인 또는 계약법에서 규정하는 것 이상의 어떤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면 그들은 불법행위 수익으로 미술품 거래대금을 지급받는다라는 점을 알거나, 혹은 알았어야 하는 경우에도 그들 고객(잠재적인 돈세탁자)을 위해 고도의 선의(utmost good faith)와 고객의 이익을 위해 행동함으로써 그들의 수탁자 의무를 준수하게 되며, 기타 법률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난점이 있다.³⁷⁾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경매회사에 대한 적절한 사전적 입법 규제나 사후적인 사법 통제를 통하여 돈세탁을 방지할 필요가 대두되는바, 대표적으로는 현금 지급시 해당 자금 출처 명시요구 또는 사법당국에 대한 신고 의무 등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2. 도난 미술품에 대한 각종 조치와 돈세탁의 방지

미술품이 돈세탁에 이용되는 까닭 중 하나는 도난 미술품을 통한 또 다른 범죄와도 연관이 깊다. 미술품의 은밀하고 불투명한 거래 관행은 장물 거래를 촉발시키고 있으며, 국제적인 거래의 경우 거래 과정의 추적도 어렵기 때문에 암시장을 통하여 몇 번의 거래를 거치면 돈 세탁을 넘어 ‘죽보 세탁’까지도 가능하다. 심지어, 도난 미술품은 합법적인 거래 가격의 3~10% 선에서 매매된다는 게 미술계의 정설인바, 미술품 관련 돈세탁

34) Cristallina S.A. v. Christie, Manson & Woods International, Inc. 117 A.D.2d 284, 292.

35) 이상정, “미술과 법”, 세창문화사, 2008. 148-152쪽.

36) 손보미, “감정실패에 대한 미술경매회사의 민·형사상 책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57-63쪽.

37) Purkey, 앞의 논문, at 134-135.

에 대한 대책은 결국 도난 미술품에 대한 조치와도 연관되지 않을 수 없다. 즉, 지하 세계의 화폐처럼 도난미술품이 널리 유통될 수 없도록 도난 미술품에 대한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것이다. 가장 용이한 방법은 도난미술품 목록을 인터넷에 공개하여 거래를 막는 것이다. 도난 미술품 데이터베이스(DB)를 관리하는 회사인 영국의 아트 로스 레지스터(Art Loss Register, “ALR”) 목록을 비롯해 FBI와 로스앤젤레스 경찰국 등이 ‘미술품 실종 신고 목록’을 공개하여 도난 미술품의 처분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 실제로 ALR 목록이 만들어진 뒤 2억 달러가량의 도난 미술품이 주인의 품으로 돌아왔다고 한다.³⁸⁾

3. 보고의무를 통한 독자적 규제의 필요성

미국의 경우, 예술품을 이용한 돈세탁자들은 18 U.S.C. s 1956에 의해 형법 책임을 부담한다. 이는 1986 돈세탁방지법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이는 조직 범죄와 맞서고 불법 마약 자금이 은행 시스템 등의 금융 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United States v. Crabtree 사건³⁹⁾에서 F. Dale Crabtree는 크리스티에게 Renoir 그림을 팔면서 판매대금에 대해 자녀 명의로 영수증(checks)을 발행할 것을 시켰다. 이 사건에서 Crabtree는 수표를 제후 사업가에게 건넸고 그는 돈을 Crabtree의 비용을 지불할 대리 위임장을 발급받은 다양한 은행계좌에 예금하였다. 법원은 Crabtree에게 18 U.S.C. s 1956 (a)(1)(B)(i) 위반을 명하면서 10만달러의 Renoir 수익금 중 5만달러를 이전한 것은 Crabtree의 파산재산의 자금을 숨긴 것이고 Crabtree는 불법행위로 인한 수입을 포함한 거래라는 점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경매회사에 대한 규제는 불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금융기관 및 부동산 영역을 이용한 돈세탁을 규제하는 법률이 존재하는 반면 미술품을 이용한 돈세탁의 경우는 특별한 보고의무 및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경매회사에게도 일정금액이 넘는 현금 거래에 대하여는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방법이 논의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자국의 돈세탁방지법과 조화를 이루어 1만 달러 이상의 예술작품 구매에 대해 거래거래보고서(Currency Transaction Report, CTR)를 금융범죄단속 네트워크(FinCEN)에 보고하도록 하자는 대안이 제시될 수 있다.⁴⁰⁾ 우리나라도 양도소득

38) 중앙일보, “도난 미술품은 마피아의 현찰 ... 연 5조원 시장”, 2014.8.22. 1940년에 사라진 뒤 2005년 회수된 파블로 피카소의 ‘흰 옷을 입고 책을 읽는 여인’이 ALR을 활용한 대표적인 회수 사례로 꼽힌다.

39) United States v. Crabtree, 1993 U.S. App. LEXIS 22927, 10th Cir. Ok. Sept. 3, 1993.

40) Hannah Purkey, 앞의 논문, at 136.

세와 관련하여, 6천만 원 이상의 미술품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개상의 보고의무를 부과하거나, 돈세탁 방지 관련 법률을 적용하여 5천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의 경우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정부가 미술산업을 통해 돈세탁을 시도하려는 자들에 대해 엄격한 감시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돈세탁을 포함한 미술품 관련 불법 행위 시도의 동기를 상당부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화랑이나 경매사들은 그들이 불법행위로 얻어진 자금을 받는다는 사실에 대해 알았던 경우 특별법을 통하여 형법적인 책임을 부과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이다. 이를 통해 경매사들이 의도적으로 돈세탁에 대해 눈감는 관행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금융기관 및 은행은 기업들이 미술품을 돈세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추세가 빈번한 것을 명백하게 인식함으로써 미술품 구매와 관련된 거래를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규제를 집행할 정부기관의 교육 및 훈련 부족에 대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세관 공무원 등은 예술작품의 판매가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갖춰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작품의 가격이라는 것은 매우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것이므로 세관공무원 등이 작품 감정의 전문가가 될 것을 요구하기보다는 이상 징후의 탐지를 요구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일 것이다. 이상 징후의 예로 작품의 출처가 가령 스위스처럼 돈세탁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느슨한 수출규제를 지닌 국가로부터 온 경우, 작품 가격의 지불 방법이 현금으로 이루어진 경우, 구매자가 전문 컬렉터인지 혹은 초보구매자인지와 같이 일반적 이해관계를 들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미술품을 통한 돈세탁을 보다 효과적으로 감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미술품 관련 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인 입법 및 공조체계의 필요성도 강조되어야 한다. 이처럼 각국이 미술품을 통한 돈세탁을 방지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필수적이지만 돈세탁은 보통 국제적 범죄로 나타난다. 세계가 점점 확장되고 금융시스템과 거래시장이 통합되면서 온라인상으로도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국가로부터 국가로 돈을 세탁하기 용이하게 된 것이다. 특히 미술시장의 경우 국경의 제약 없이 세계적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기업들 역시 그림을 구입하였다가 다시 되팔 때에 여전히 수요가 높을만한 세계적 거장의 작품을 크리스티나 소더비와 같은 대형 경매회사로부터 구입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돈세탁을 근절하기 위해 국제적 협의 및 대형 경매회사 등의 자발적 정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위험관리는 경매회사의 브랜드 네임이나 일반인의 예술시장 전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국제적인 차원의 조약으로는 1970년 UNESCO협약 및 1995년 UNIDROIT 협약 등에서 각 체약국들에게 미술품을 포함한 문화재의 불법거래에 대한 방지 의무, 즉 관련 입법의

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으로 돈세탁방지 입법 및 규제조치에 대한 명문적인 규정은 없지만, 각 계약국의 입법 의무는 돈세탁의 범위까지 확장해서 파악해야 할 것이다.⁴¹⁾

4. 화랑 및 경매회사의 자발적 관행

경매사와 미술품 중개상들에게 채택된 자발적인 기준을 통해 돈세탁의 시도를 일정부분 감소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의 경매사와 중개상들은 미술 작품의 국제적 거래에 관한 지침(Code of Practice for the Control of International Trading in Works of Art)에서 도품이거나 불법반출 된 작품이어서 판매자에게 정당한 권리가 없거나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물건을 취급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약을 제정하였다. 이처럼 돈세탁의 효과적 규제를 위해서는 경매회사가 돈세탁자들이 제공하는 물건의 출처에 관심을 기울일 뿐만 아니라 고의적으로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하는 접근이 필요하다.⁴²⁾

또한 비밀준수의무 등에 대한 약관 개정을 통하여 미술품 중개상들이 획득하고 거래한 미술작품의 출처, 설명, 가격 및 공급자의 이름 등에 대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방법도 유용할 것이다. 나아가, 법령상 강제적인 차원이 아니라 화랑협회 등 미술계 내부의 자치단체 등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보고의무를 실시, 통제함으로써 미술품의 불법거래를 줄일 수도 있다. 물론 미술작품 거래에 대한 정보공개 또는 협회 차원의 보고의무 계도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불법적인 동기가 숨어있지 않더라도, 소장품을 공개하기를 원하지 않는 등의 합법적인 동기도 있을 뿐만 아니라, 보고의무 때문에 미술시장이 필요 이상으로 냉각될 우려도 있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V. 결론 - 미술시장 발전과의 조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술 시장은 거래 내역 및 가격형성 과정, 거래 동기 등이

41) Purkey, 앞의 논문, at 136-143.

42) 보다 자세한 내용으로 Kimberly L. Alderman, The Ethical Trade in Cultural Property: Ethics and Law in the Antiquity Auction Industry, ILSA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2008.

배일에 쌓여있어 마치 안개가 자욱이 끼어있는 것 같다.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기업들의 재산 은닉 및 탈세의 수단으로 미술작품의 구입이 빈번한 것도 사실이다. 2013년도부터는 점 당 6천만 원 이상의 유고작가의 미술품에는 20%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당장 미술 시장에는 찬바람이 불고 있다.⁴³⁾ 국내 미술 시장이 아직 제대로 성장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양도소득세 등 세금의 부담으로 미술 시장이 더욱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사건으로 인해 미술계 전체가 부정적으로 비춰지는 것은 앞으로 미술 산업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규모가 큰 경매회사나 화랑에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높은 전문수준 및 신용을 유지시킨다는 점에서 반드시 손해인 것만은 아니다. 과실책임이나 윤리적 지침의 준수를 통해 은밀하게 숨겨질 수 있는 예술계의 뒷거래에 대한 자정 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도 여겨진다. 하지만, 최근 국내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미술품 관련 범죄 및 그와 연루된 돈세탁,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제적으로 연결된 조직범죄에 미술품이 악용되는 세계적인 추세를 고려해본다면, 이는 단순히 미술계의 시스템 차원에서만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이면서도 효율적인 국내 입법 및 철저한 집행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야 하며, 더 나아가 사법당국과 미술계 사이의 긴밀한 협력관계 및 각국 책임 있는 기관들 사이의 국제적인 공조를 통하여 미술품 범죄의 조직화 및 국제화를 방지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이와 함께, 미술계 내부의 자치적인 관행 또는 계몽을 통하여 정보공개 또는 보고 의무 등의 실시도 효율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므로 위에서 살펴본 국내외 입법 및 관련 사례들을 통하여 더 체계적, 전문적으로 미술품 관련 돈세탁에 대응함으로써 추후 더 교묘해지고 지능화, 대규모화될 수 있는 미술품 범죄 및 그에 따른 돈세탁의 뿌리를 뽑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본 논문에서는 심도 있게 다루지 못했지만, 돈세탁 관련 일반적인 규정을 미술품 거래시장에 확장적용하거나 독자적 규제를 마련하는 경우 객관적인 가치평가가 어려운 다른 형태의 자산거래시장과의 형평성의 문제, 부동산거래 등 전통적인 돈세탁 방법과의 비교분석, 미술품 거래시장의 사물적 및 장소적 범위 책정 등도 후속적인 쟁점들로서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43) 이데일리, 미술품 양도소득세 시행, 6000만원 이상 거래량 20%↓, 2014. 10. 5. 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에 따르면 미술품 양도소득세 과세제도가 시행된 2013년 1월 1일 이후 경매시장에서 6000만 원 이상 미술품 거래량은 202건으로 2012년과 비교해 50건이 줄었다. 거래금액도 같은 기간 약 610억 원에서 421억 원으로 감소했다. 한편, 미술품 양도소득세 과세 실시 이후 6000만 원 이하 미술품 거래량은 2012년 6780건에서, 2013년 7665건으로는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금액도 같은 기간 278억 원에서, 302억 원으로 늘었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이병기/이경재, 돈세탁행위의 범죄화에 관한 연구, 연구총서 93-2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 이상정, 미술과 법, 세창문화사, 2008.
- 코디최, 동시대 문화지형도, 컬러그라피, 2010.
- Hasib, Syed Waqar, Why the Global Anti-Money Laundering Regime is Ill-Equipped to Fight the War on Terrorism, and What to do about It, 2004.

2. 학술지

- 김 철, “중국 돈세탁방지법의 제정과 시사점”, 중국법연구 8집, 한중법학회, 2007, 1-25쪽.
- 이보영, “자금세탁방지법제에 대한 형법적 검토”, 형사법연구 21권 1호, 한국형사법학회, 2009, 441-467쪽.
- 이선민, “미술품 위작 - 미술품 위조근절에 대한 법제도 개선 방안”, 콘텐츠재산연구 제2권, 차세대콘텐츠재산학회, 2011, 43-61쪽.
- 이재경, “미술품 유통에 대한 행정적 규제”, 행정법연구 37권,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3, 79-102쪽.
- 인찌엔핑(Jian Feng Yin), “중국 돈세탁죄 상위범죄의 입법정의 및 개선”, 비교형사법연구 12권2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0, 613-629쪽.
- 장웬황/한상돈(역), “중국 돈세탁범죄의 현황 및 반돈세탁죄 입법 분석”, 비교형사법연구 8권2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6, 787-804쪽.
- 정 완, “일본의 돈세탁 규제 동향”, 형사정책연구소식 63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34-36쪽.
- 최관식, “기업을 이용한 돈세탁에 대한 규제”, 법학논총 21집,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269-293쪽.
- Alderman, Kimberly L., The Ethical Trade in Cultural Property: Ethics and Law in the Antiquity Auction Industry, ILSA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2008.

- Baldwin, F.N., Art Theft: Perfecting the Art of Money Laundering, Jan. 2009 for the 7th Annual Hawaii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rts & Humanities.
- James, Marianne, Art Crime, Australian Institute of Criminology, Trends and Issues in Crime and Criminal Justice.
- McCord, Julia A., The Strategic Targeting of Diligence: A New Perspective on Stemming the Illicit Trade in Art, Indiana Law Journal, 1994.
- Purkey, Hannah, The Art of Money Laundering, Florida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2010.

3. 학위논문

- 김민아, “미술품 시장 및 거래에 관한 법적 고찰”, 한국외국어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손보미, “감정실패에 대한 미술경매회사의 민·형사상 책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4. 기타자료

- 조성식, 삼성 비자금-국제 갤러리, ‘수상한 거래’ 내막 : 삼성 차명계좌서 거액 유입 후 미술품 수입액 급증, 신동아, 2008.

[Abstract]

Legal Approach on Art-related Money Laundering

Lee, Jae-Kyoung*

The traditional ways to launder money are no longer as effective for organized crime groups as they once were. One new way is through the use of art. Since the use of art to launder money is extremely effective, there is a need to analyze numerous elements which makes the use of art an effective means to launder money, including the mobility of art, the speculative price of art, and the complexity and difficulty faced by officials in correctly authenticating the price for a piece of art. Further, focus on how art is used to launder money if it is purchased from an auction house or alternatively, if the art is stolen, by those who intend to use it to launder money, especially for the case of organized crime. The dynamics of trade-based money laundering should be evaluated and there are many techniques of trade-based money laundering for organized crime. The need to regulate auction house is another crucial issue.

In conclusion, the question of what can be done to help fight money laundering through the use of art will be evaluated. Taking into consideration why organized criminals use art to launder money and how effective the use of art to launder money has become, this paper is focusing on the measures that should be implemented in order to combat the use of art to launder money. While no method will effectively prevent organized criminals from laundering the money acquired from illegal activities, regulations must be imposed upon the art industry in order to make it more difficult for organized criminals to use art to launder money. Unfortunately, once laundering money through art becomes more suspicious and difficult for organized criminals, they are sure to find another novel and effective way to cleanse their ill-gotten gains.

* Assistant Professor, Law School of Konkuk University

[Key Words] Art crime, Money Laundering, Organized crime, Auction house,
UNESCO Convention(1970), Unidroit Convention(1993)